

● 제31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7.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2. 7. 13.
- 회부일 : 2022. 7. 14.
- 의안번호 : 21

II.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1. 세입

- 해당 없음.

2. 세출

-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기정 예산(381억 7,285만 원) 대비 2억 1,783만 원(0.6%) 증가한 383억 9,068만 원임.

<표-1>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계	38,390,677	38,172,849	217,828	0.6
	사 업 비	36,819,707	36,603,979	215,728	0.6
	행 정 운 영 경 비	1,570,970	1,568,870	2,100	0.1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세입 추경안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 추경안 검토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정수 증가(110명→112명), 상임위원회 1개 신설(10개→11개), 교섭단체 확대(1개→2개),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신규채용)등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기정예산(381억 7,285만원) 대비 감액 5,600만 원, 증액 2억 7,383만 원으로 총 2억 1,783만 원(0.6%)이 순증된 383억 9,068만 원을 편성·제출하였음.

<표-2>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경안			
			감액	%	증액	%
계	38,390,677	38,172,849	△56,000	△0.1	273,828	0.7
사 업 비	36,819,707	36,603,979	△56,000	△0.2	271,728	0.7
행정운영경비	1,570,970	1,568,870	-	-	2,100	0.1

나. 사업별 검토

(1) 의회 운영 지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정활동 수행비, 기본경비 등 4개 사업

○ 의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 상임위원회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의회 운영 지원’은 ‘22년 6월 말 기준 4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 재배치 및 운영 지원, 의원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부대경비, 신설 상임위원회 인쇄비, 사내동호회(2개) 지원 등에 총 9,396만 원이 증액된 15억 5,820만 원임.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내동호회 지원을 집행기관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표-3> 의회운영 지원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 운영 지원	1,558,204	1,464,244	93,960	6.4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1,700만 원) -의원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부대경비(2,160만 원) -신설 상임위 인쇄비(600만 원) -사내동호회 지원(456만 원)

- 둘째,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22년 6월 말 기준 2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기획담당관과 상임위원회 1개 신설로 인한

사무기기 등 각종 물품구매를 위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19만 원을 편성했음.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원정수 확대(110명→112명)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 정책지원관 등 총 37명이 증원됨(2022.1.13. 시행). 이처럼 제11대 의회 개원 전에 의회사무처 조직·정원 조정과 상임위원회 신설 등이 예상되었음.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무공간과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 등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원활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의회사무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4>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565,190	425,190	140,000	32.9	-정책기획담당관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물품구매 수요 증가 ¹⁾

- 셋째, ‘의정활동수행비’는 의회비(205) 12개 항목으로 구성되고²⁾, ‘22년 6월 말 기준 4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추경안은 시의원 정수 증가분(2명)을 반영하기 위해 4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의 기정예산 총액한도액(1,884,111천 원)을 의원정수 증감 비율(2/110)에 따라 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의정운영공통경비(661만 원)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신설 상임위원장/1,052만 원)로 각각 배분하여 총 1,713만 원³⁾이 증액된

1) 물품구매 세부내역은 불임1 참조

2) 의정활동 수행비는 법정경비인 의회비(205) 항목으로 구성되며, 2022년 현재 총 12개로 구성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임.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은 총액한도제로 운영되어 그 범위 안에서 4개 통계목 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함.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과 2022년도 기정예산 편성 현황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은 불임2~3 참조.

109억 1,573만 원임.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신설되는 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배정과 관련해 기존 10개 상임위원장의 배정액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5> 의정활동 수행비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정활동동비	10,915,725	10,898,597	17,128	0.2	-의원 정수 증가(2명) 및 상임위원회 신설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22년 6월 말 기준 4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신설(1개)에 따라 4급 수석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210만원(6개월분)이 증액된 15억 7,097만 원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표-6> 기본경비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액	증감률	증감사유
기본경비	1,570,970	1,568,870	2,100	0.1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4급 직급 1개 추가

(2)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법

3) 기정예산 한도액(1,884,111천원)×의원정수 증가 비율(2명/110명)×잔여기간(6개월/12개월) = 17,128천원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소송의 적극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6월 말 기준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집행기관 재의요구 등에 의한 재송 건수 증가(총 5건)⁴⁾로 인해 그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64만 원이 증액된 1억 2,282만 원이 편성됐음. 이는 기정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7>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122,820	102,180	20,640	20.2	-쟁송건수 증가로 인한 추가 소송비용

(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지원하여 시민의견 청취 및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6월 말 기준 2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상반기 중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40만 원이 편성됐음.

4) 의회 관련 소송 현황은 총 5건으로 ① 수석전문위원 임시지위확인 가처분(승소) ②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재의결 무효) ③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 진행 ④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무효확인소송 진행 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진행) 등임.

<표-8>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82,400	238,400	△56,000	△23.5	-상반기 선거기간 토론회 미실시에 따른 감액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1회당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59%, 2021년 128%, 2022년 6월 말 기준 25%로 연도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그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9> 최근 3년간 공청회 및 토론회 사업추진 실적

구분	목표	추진 실적
총 계	240건	169건
2020년	80건	47건
2021년	80건	102건
2022년(~6.30.)	80건	20건

- '22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수요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감추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붙임1】 정수물품 등 구매(예정) 세부내역

NO.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위원장실]				
1	책 상	2000*1000*750	1	1,201,200	1,201,200
2	3단서랍	430*550*620	1	739,200	739,200
3	의자	629*599*1204	1	601,000	601,000
4	장식장	800*400*2000	1	972,400	972,400
5	책장	800*400*2000	1	776,600	776,600
6	옷 장	600*400*2000	1	751,300	751,300
7	크레덴자	1800*550*620	1	758,000	758,000
8	1인소파	790*865*870	5	306,900	1,534,500
9	응접탁자	1600*600*425	1	672,000	672,000
10	협탁	480*730*470	1	343,000	343,000
	[간담회장]				
11	1인소파	730*810*1010	17	454,300	7,723,100
12	응접탁자	1800*700*425	4	801,000	3,204,000
13	협탁	450*720*500	2	400,000	800,000
14	옷장	400*550*2000	16	178,000	2,848,000
	[상임위원회 회의실]				
15	테이블(위원장석) 보조포함	1600*700*750	1	2,970,000	2,970,000
16	테이블	1500*700*750	2	1,210,000	2,420,000
17	테이블(전동모니터)	950*700*750	14	1,815,000	25,410,000
18	보조탁자	300*700*750	14	968,000	13,552,000
19	테이블(피감석)	1500*700*750	2	1,210,000	2,420,000
20	속기테이블	1600*600*750	1	1,210,000	1,210,000
21	배송비	식	1	550,000	550,000
22	설치비	식	1	550,000	550,000
23	의자(위원장용)	620*610*1080	1	400,000	400,000
24	의자(위원용)	570*520*1030	24	350,000	8,400,000
25	의자(배석용1)	460*490*970	7	280,000	1,960,000
26	의자(배석용2)	530*540*840	14	116,800	1,635,200
27	의자(속기사용)	600*590*910	2	182,000	364,000

28	사회자대	760*550*1200	1	608,000	608,000
	[전문위원실]				
29	L형책상	1600*1200*720	11	373,200	4,105,200
30	사이드캐비닛	600*600*720	3	229,000	687,000
31	3단서랍(전자키)	391*526*670	11	286,000	3,146,000
32	의자	655*593*1135	1	405,000	405,000
33	의자	678*593*1164	10	339,000	3,390,000
34	2단캐비닛[TV대]	800*400*799	3	210,400	631,200
35	3단캐비닛	800*400*1151	11	247,000	2,717,000
36	5단캐비닛	800*400*1840	5	365,000	1,825,000
37	캐비닛 상판	800*403*18	19	32,000	608,000
38	옷장	500*400*1840	3	253,000	759,000
39	옷장상판	500*403*18	3	20,200	60,600
40	2인용옷장	600*510*2120	5	429,000	2,145,000
41	회의테이블	2000*1000*720	2	322,000	644,000
42	회의용의자	600*575*845	15	155,000	2,325,000
43	탕비대(인조대리석)	1200*600*1000	1	1,185,600	1,185,600
44	블럭판넬(일면콘센트)	1200*60*1166	5	372,000	1,860,000
45	블럭판넬(일면콘센트)	800*60*1166	14	293,000	4,102,000
46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1200*60*1166	14	315,000	4,410,000
47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1000*60*1166	1	272,000	272,000
48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600*60*1166	1	214,000	214,000
49	2방향연결	60*1166	3	41,000	123,000
50	3방향연결	60*1166	8	46,000	368,000
51	마감바	60*1166	18	12,000	216,000
52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800*60*1766	7	336,000	2,352,000
53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1000*60*1766	4	379,000	1,516,000
54	블럭판넬(양면회전타일)	1200*60*1766	8	423,000	3,384,000
55	2방향연결	60*1766	4	57,000	228,000
56	3방향연결	60*1766	1	60,000	60,000
57	마감바	60*1766	6	16,000	96,000
합	계				₩129,208,100

【붙임2】 '22년도 의정활동 수행비 12개 경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비고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0,749,463	10,392,471	10,898,597	506,126	
① 의정활동비	1,980,000	1,980,000	1,980,000	-	
② 월정수당	5,291,286	5,291,286	5,338,899	47,613	'22년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사항 반영 ('21년 공무원보수 인상을 0.9%)
③ 의원국내여비	198,000	198,000	198,000	-	
④ 의원국외여비	509,988	152,996	509,988	356,992	<총액한도제> '21년 본예산 수준 반영
⑤ 의정운영공통경비	1,015,242	1,015,242	1,024,616	9,374	<총액한도제> ○의회경비 총액한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산정('22년개정) -한도액*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0년 0.5%)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96,120	396,120	414,810	18,690	<총액한도제> 의정협의체 회장 단체 추가분 증액편성
⑦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67,800	167,800	167,800	-	
⑧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66,000	66,000	66,000	-	<총액한도제>
⑨ 의원정책개발비	550,000	550,000	550,000	-	※ 2020년 통계목 신설 (의원수 110명 ×5,000천원)을 반영하여 별도 한도 산정
⑩ 의정협의체부담금	214,609	214,609	244,609	30,000	○협의체회장사·도 특별부담금 50,000천원 증액 ○실무위 회장 특별부담금 20,000천원감액
⑪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8,018	158,018	194,386	36,368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반영
⑫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2,400	202,400	209,489	7,089	보험요율 인상분 반영

【붙임3】 의회비(205)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 단,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 ※ 단,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p>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p> <p>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p> <p>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p> <p>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p> <p>01. 의정활동비</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p> <p>02. 월정수당</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p> <p>03. 의원국내여비</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p> <p>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p> <p>04. 의원국외여비</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p> <p>2. 편성기준</p> <p>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p>◦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p> <p>※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p> <p>05. 의정운영공통경비</p> <p>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p> <p>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p> <p>4.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p> <p>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p> <p>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p> <p>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p> <p>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p>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p>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p> <p>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p> <p>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 불가 <p>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p>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p> <p>1.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p> <p>09. 의원정책개발비</p> <p>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p> <p>10. 의장협의체 부담금</p> <p>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 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 부담금</p> <p>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p> <p>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p> <p>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p> <p>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p>	

【붙임4】 '22.6.30기준 의회사사무처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기준일 ' 22. 6. 30. / 단위 : 천원, %)

연 번	사 업 명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 21년 대비		' 22년 예산 집행현황		
				증감액	증감률	기정예산	집행액	%
총 계		29,112,216	38,172,849	9,060,633	31.1	38,643,534	11,633,664	30.1
1	의회 운영 지원	1,368,945	1,464,244	95,299	7.0	1,464,244	693,134	47.3
2	유공 시민 표창 및 시상	86,038	136,966	50,928	59.2	136,966	49,892	36.4
3	의원수첩등제작	29,200	48,500	19,300	66.1	48,500	0	0.0
4	의회노후집기교체및 정수물품구매	247,690	425,190	177,500	71.7	425,190	86,494	20.3
5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 직원 연수	9,840	54,500	44,660	453.9	54,500	19,850	36.4
6	의정활동수행비	10,392,471	10,898,597	506,126	4.9	10,898,597	4,673,020	42.9
7	의회청사유지관리	1,325,064	1,528,624	203,560	15.4	1,528,624	777,519	50.9
8	의회청사방호및 청소 관리	456,984	521,389	64,405	14.1	521,389	162,541	31.2
9	의회청사시설개선	735,560	716,413	△19,147	△2.6	804,797	278,908	34.7
10	의회청사공간 재배치및내진보강	747,047	5,988,000	5,240,953	701.6	6,351,086	900	0.0
11	국외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초청	20,413	114,711	94,298	462.0	114,711	4,000	3.5
12	해외상호결연도시 교류및국제회의참석	42,086	289,620	247,534	588.2	289,620	2,000	0.7
13	국내의정활동교류	60,800	60,800	0	0.0	60,800	17,400	28.6
14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51,695	168,245	16,550	10.9	177,245	77,934	44.0
15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42,777	45,522	2,745	6.4	45,522	18,161	39.9
16	서울시 의회 소식지 발행	1,050,256	1,871,320	821,064	78.2	1,871,320	1,016,196	54.3
17	의회홍보촬영장비관리	142,345	158,945	16,600	11.7	158,945	72,945	45.9

연 번	사 업 명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 21년 대비		' 22년 예산 집행현황		
				증감액	증감률	기정예산	집행액	%
18	의 정 활 동 영 상 홍 보 물 제 작	282,650	375,400	92,750	32.8	375,400	111,100	29.6
19	시 민 여 론 조 사 운 영	180,000	180,000	0	0.0	180,000	0	0.0
20	의 정 활 동 홍 보 및 광 고	5,487,445	5,457,983	△29,462	△0.5	5,457,983	1,627,972	29.8
21	서울시의회실감형 메 타 버 스 플 랫 폼 사 업	0	1,000,000	1,000,000	-	1,000,000	450	0.0
22	회 의 록 발 간	47,525	47,525	0	0.0	47,525	13,827	29.1
23	청 소 년 의 회 교 실 운 영	153,665	187,815	34,150	22.2	187,815	50,915	27.1
24	의 정 정보 화 지 원	1,359,309	1,585,539	226,230	16.6	1,585,539	337,047	21.3
25	의 정 정보 화 시 스템 유 지 보 수	1,000,439	1,192,859	192,420	19.2	1,183,859	398,408	33.7
26	의 회 입 법 정 책 연 구 용 역	966,400	962,780	△3,620	△0.4	981,995	96,495	9.8
27	의 회 전 문 영 도 서 관 운 영	204,276	205,546	1,270	0.6	205,546	69,361	33.7
28	정 책 위 원 회 운 영 강 화	87,266	85,906	△1,360	△1.6	85,906	47,533	55.3
29	의 회 의 정 책 기 능 지 원	74,545	68,450	△6,095	△8.2	68,450	42,700	62.4
30	의 회 입 법 범 료 고 문 운 영	117,580	102,180	△15,400	△13.1	102,180	51,091	50.0
31	대 학생 인턴 십 운영	0	94,705	94,705	-	94,705	2,000	2.1
32	서울시 재정 및 예산 운영 연구 분석	81,545	81,545	0	0.0	81,545	30,599	37.5
33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43,310	28,910	△14,400	△33.2	28,910	13,600	47.0
34	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 론 회 개 최	287,200	238,400	△48,800	△17.0	238,400	64,114	26.9
35	의 안 의 비 용 추 계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26,970	35,870	8,900	33.0	35,870	14,500	40.4
36	예 산 정 책 연 구 위 원 회 운 영	59,350	61,350	2,000	3.4	61,350	19,925	32.5

연 번	사 업 명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당초예산	' 21년 대비		' 22년 예산 집행현황		
				증감액	증감률	기정예산	집행액	%
37	현장중심민원처리지원	30,150	30,150	0	0.0	30,150	15,013	49.8
38	의정 모니터 운영	82,980	70,280	△12,700	△15.3	70,280	35,140	50.0
39	의회신문고운영 및 현장보고서발간	19,200	19,200	0	0.0	19,200	3,120	16.3
40	기 본 경 비	1,611,200	1,568,870	△42,330	△2.6	1,568,870	637,860	40.7